#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51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김위상・우재준・박정하

김예지 · 김소희 · 김상훈

김민전 · 서일준 · 조경태

김선교 · 임이자 · 강승규

김승수 · 김성원 · 신동욱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총 1,045건의 지반 침하 사고 중 482건이하수관로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정비대상인 하수도 328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 정비사업 건수는 서울 2건, 광주 3건, 대전 3건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관을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지반 침하 사고의 발생 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2.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
- 3.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
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역의 지정 등) ①
은 <u>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u>해당하는 지역</u>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u>지역</u> 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	
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	
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	
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u>&lt;신 설&gt;</u>	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
	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u>우려가 있는 지역</u>
<u>&lt;신 설&gt;</u>	2.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공
	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
	려가 있는 지역
<u>&lt;신 설&gt;</u>	3.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